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국내 이행 모니터링의 최종 퍼즐 '장애인단체의 참여 보장'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33조 2항 독립모니터링체제를 중심으로



장애인정책리포트

월간 **한국장총** 2023.7.31. _ Vol.433

함께하는 회원단체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신장장애인협회,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한국장르장애인협회, 한국한센
총연합회,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한국자폐인사랑협회,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한국장애인선교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한국장애인문화협회, 한국장애인기업협회, 장애인문화예술진흥개발원, 국제
장애인문화교류협회, 한국산재장애인협회, 부산장애인총연합회, 인천장애인단체총연합회, 광주장애인총연합회,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 울산장애인총연합회, 강원도장애인단체연합회, 충청북도장애인단체연합회,
충청남도장애인단체연합회, 전라남도장애인단체총연합회, 경상북도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경상남도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총연합회, 세종특별자치시장애인단체연합회,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국내 이행 모니터링의 최종 퍼즐 '장애인단체의 참여 보장'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33조 2항 독립모니터링체제를 중심으로

글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김소영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제33조에서 (나)협약 이행을 모니터할 독립모니터링기구를 지정 또는 설치할 것과 (다)모니터링에 장애인단체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독립모니터링기구는 협약과 당사국에서 인정하는 공식적인 협약 이행 모니터링 기관으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독립모니터링기구의 지위와 역할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모니터링기구로 지정되어있는 지금, 장애인단체의 독립모니터링기구 참여의 필요성과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01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모니터링

대한민국 2022년 두 번째 최종견해 받아

- 지난해 대한민국은 제2·3차 병합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심의를 받음. 2014년 이후 8년 만의 심의 과정에 장애인단체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민간보고서를 작성하고, 현지 로비 활동을 통해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국내 장애인 권리 현황을 전달하였음. 의료적 관점을 토대로 하는 국내 장애인 관련 법과 정책, 장애인 단체의 형식적인 참여, 포괄적 차별금지법 부재, 가족에게 전가되는 장애아동 양육 부담 등의 이슈들을 위원회에 전했고, 위원회는 제1조부터 33조에 걸쳐 83개의 최종견해를 발표함¹

다음 심의 10년 후, 이행 촉구 위한 모니터링 중요성 커져

- 다음 보고서 제출 기한은 2031년으로 약 10년 후에 세 번째 심의를 받게 될 예정임. 다음 심의까지의 시간이 상당히 남아있는 만큼, 정부의 협약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02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과 모니터링

실체적 권리, 이행 및 모니터링, 절차 등 담고 있는 협약

- 유엔은 사회적 소수자인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 보장, 증진하기 위해 2006년 협약을 채택함. 대한민국은 2008년 12월 협약을 비준하였으며 2009년 1월 협약이 국내에 발표되었음
- 협약은 전문과, 50개 조항으로 이뤄진 본문 그리고 협약의 부속 문서인 선택의정서로 구성되어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음

표1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구성

구분	내용	
전문	- 협약 제정 배경, 원칙, 목적 등 정리 - 협약의 함축본으로 간주, 총 25개 문단, 독자적 규범적 효력 있음	
본문	1조~8조	목적, 정의, 일반원칙, 일반의무, 평등과 비차별, 장애여성, 장애아동, 인식제고 협약 전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
	9조~32조	접근권, 생명권, 학대폭력으로부터 자유, 가족 구성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 등 자유권과 교육, 노동, 건강, 참정권 등 사회권 장애인의 실체적 권리
	33조~40조	국내 이행 및 모니터링, 장애인권리위원회, 당사국 보고, 보고서 심사 등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국내의 모니터링
	41조~50조	기탁, 서명, 발효, 유보 등 협약의 절차적 규정
선택의정서	개인진정제도, 직권조사제도	

¹ 장애인정책리포트 423호 참고

■ 국내 이행과 모니터링의 근거

- 협약 제33조는 국내 이행과 모니터링에 대한 조항임

제33조(국내 이행과 모니터링)

1. 당사국은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된 사항을 위하여 국내조직의 체계에 맞춰 정부 내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다양한 부문과 다양한 수준에서 관련 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정부 내에 조정기구를 설치하거나 지정하는 것을 충분히 고려한다.
2. 당사국은 자국의 입법과 행정 체계에 따라 이 협약의 이행을 증진, 보호 및 감독하기 위하여 적절한 경우 당사국 내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독립적 기구를 포함한 체제를 유지 강화 지정 또는 설치한다. 이러한 체제를 지정 또는 설치할 경우 당사국은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한 국가기구의 지위 및 역할과 관련된 원칙을 고려한다.
3. 시민단체, 특히 장애인과 이들을 대표하는 단체들은 감독 절차에 충분히 개입하고 참여한다.

- 제33조 2항은 협약 이행을 모니터링할 공식적이고 독립적인 기구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대한민국은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를 협약 모니터링 기구로 지정하였음
- 이어지는 3항은 ‘시민사회, 특히 장애인과 그들을 대표하는 단체는 모니터링 과정에 완전히 포함되고 참여하여야 한다’며 모니터링 과정에 장애인단체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음
- 독립모니터링기구는 이행 전담부처가 협약을 올바르게 이행하는지 점검하며, 설명한 국제 모니터링 과정에도 공식적으로 참여함. 독립모니터링기구로서 보고서를 제출하고, 유엔 심의 시 공식적인 발언의 기회도 제공받고 있음

■ 당사국의 독립적 협약 모니터링의 중요성

- 협약 이행과 모니터링은 국내, 국제 차원으로 나눠 설명할 수 있음
- 국제 이행 차원에서 협약의 이행은 협약을 비준한 당사국 정부로, 2023년 7월 기준 185개 국은 협약을 이행할 의무가 있는 이행 주체임
- 국내 이행 차원에서 협약 제33조 1항은 당사국은 협약 이행과 관련해 국내 조직 체계에 맞춰 정부 내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전담부처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보건복지부가 전담부처로 지정되어있으며, 관련 부처가 협약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이에 상응하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조치해야 할 의무가 있음
- 국제 모니터링 차원에서는 위원회가 그 역할을 하고 있음. 위원회는 협약 제34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당사국은 제35조에 따라 협약 이행 사항을 정기적으로 위원회에 보고해야 함. 우리나라는 이에 따라 제3차 심의까지 2022년에 마쳤음
- 국내 모니터링 차원에서는 제33조 2항에 규정된 독립모니터링기구가 그 역할을 담당해야 함.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모니터링기구로 지정되어 있음

표2 협약 이행과 모니터링

	국제	국내
이행	협약 비준한 당사국 정부	협약 이행을 담당하는 전담부처 (focal point) (우리나라의 경우 보건복지부)
모니터링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독립모니터링기구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 위원회는 ‘독립모니터링체제와 위원회 업무 참여에 대한 가이드라인(2016)’에서 협약 모니터링 활동이 협약의 원칙과 목적을 추진하고, 장애인에 대한 기존의 접근방식에서 인권적 모델로 패러다임을 전환을 주도하며, 장애인을 권리 주체자로서 그들의 존엄성과 사회에 대한 기여를 완전히 인정, 증진, 보호한다며, 협약의 모니터링을 강조하고 있음

체가 참여해야 함을 이어서 밝힘. 이는 협약 본문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으로 당사국에게 이를 이행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03 독립모니터링기구란?

협약 관련 문헌 곳곳에 담긴 독립모니터링기구

- 독립모니터링기구는 협약, 위원회에서 발표한 ‘독립모니터링체제와 독립모니터링체제의 위원회 과업 참여에 대한 가이드라인’, ‘장애아동을 포함한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를 통한 장애인의 참여에 관한 일반논평 7호’에 언급되어 있음

독립모니터링기구 규정하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 제33조 2항은 ‘당사국 내에 협약의 이행을 증진, 보호, 감독하기 위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독립적 기구를 포함한 체제를 유지, 강화, 지정 또는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이러한 체제를 지정 또는 설치할 경우, 당사국은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한 국가기구의 지위 및 역할과 관련된 원칙을 고려’하도록 함. 이어지는 3항에서는 ‘시민단체, 특히 장애인과 이들을 대표하는 단체들은 모니터링 절차에 충분히 포함되고 참여한다’며, 모니터링 과정에 장애인단

독립모니터링기구의 특징과 역할 설명한 ‘가이드라인’

- 가이드라인은 앞서 설명한 협약의 제33조 2항과 3항에 대한 해설과 독립모니터링체제가 위원회의 업무, 예를 들면 보고 절차, 일반논평 채택 절차, 개인진정절차, 조사절차 등에 수행해야 할 역할과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음. 또한 독립모니터링체제의 역할로 국내에서의 협약이 올바르게 이행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는 활동의 중요성도 설명함. 이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다루고자 함

독립모니터링기구에 장애인단체 참여 강조하는 ‘일반논평 7호’

- 제33조 2항에 따라 모니터링 절차의 전 과정에서 국가인권기구를 포함한 독립모니터링체제를 마련하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제33조 3항에 따라 마련된 독립모니터링체제에 시민사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는 당사국의 의무도 설명함. 또한 이때 시민사회는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여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음

특수성과 독립성, 유연성 갖춘 독립모니터링기구

유일무이한 오리지널리티, 특수성

- 협약의 독립모니터링체제는 어느 다른 유엔인권협약에서도 찾아보지 못한 독특한 제도로, 특수성을 지님.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비롯하여 유엔에는 총 10개의 유엔인권협

약이 존재하지만, 이중 협약의 본문 내에 협약을 이행할 전담부처를 행정부 내에 지정할 것과, 모니터링을 전담하기 위한 독립적인 체제를 설치할 것을 규정하는 조항이 존재하는 협약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 유일함. 유엔고문방지협약이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긴 하지만, 협약을 보충하는 문서인 선택의정서에 담겨있음

● 실질적인 독립성과 기능적인 독립성

- 가이드라인에서는 당사국은 독립모니터링체제의 실질적, 기능적 독립성을 모두 존중해야 한다고 설명함. 실질적 독립성을 존중하기 위해 당사국은 독립모니터링체제가 적절하고 포괄적인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함. 여기에서 말하는 독립모니터링체제의 역할과 기능은 협약에 담긴 모든 권리와 관련하여 이를 보호하고, 모니터링하는 기능을 포함해야 함. 이어서 기능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당사국이 독립모니터링체제를 구성하는 각 기구가 당사국의 행정부로부터 독립적이며, 공개적이고 민주적이며 투명하고 참여적인 방식으로 임명된 회원을 보유하고, 충분한 예산과 기술, 숙련된 인력을 보유해야 함을 언급하고 있음

● 특정한 지정 절차 갖추지 않은 유연성

- 협약이나 관련 문헌들에서는 독립모니터링체제를 지정하거나 설립하기 위한 특정한 절차를 설명하지 않음으로써 각 국가가 각자의 상황에 맞춰 독립모니터링체제를 설립할 수 있도록 편의와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음. 다만, 가이드라인(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2016)에서는 빠른 시

일 내에, 장애인과 그들을 대표하는 단체와의 포괄적인 협의를 거쳐 지정해야 한다고 설명함

● 유지 및 강화를 위한 자원 투자 요구

- 체제 유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당사국은 체제가 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기반을 갖추도록 보장해야 함. 국가 예산을 통해 적절한 자금과 기술적 인적 전문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음
- 국가로부터 예산 등의 지원을 받는 것이 독립성을 저해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음. 당사국의 의무는 '독립모니터링체제'가 당사국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자원을 지원하면서도, 모니터링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과 논의의 방향에 있어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임

■ 심의, 일반논평 작성, 개인진정 등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업무 전반에 참여

- 독립모니터링체제는 협약을 기반으로 하여 당사국이 장애인의 권리를 국내에서 보호, 보장, 증진할 수 있도록 의견 표명 등을 해야 하며, 당사국은 이를 국내 정책에 반영하고 조치 결과를 보고할 수 있음

● 정부의 협약 이행 심의에 참여

- 독립모니터링체제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보고절차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음. 보고절차 전 과정이란 당사국에게 부여된 보고의무를 포함한 협약에 따른 의무사항을 당사국이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당사국이 적절한 시일 내에 보고를 마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을 의미함
- 또한 국가보고서에 대한 독립모니터링체제의

대안보고서를 제출하고, 위원회와 당사국의 심의에 참여할 수 있음. 위원회는 심의 시 독립모니터링체제에게 심의 개회 및 폐회 시 정부 발언 전후로 발언 기회를 제공함. 또한 위원회와 비공개 면담 진행이 가능함

- 심의 이후에는 당사국이 최종견해를 접근가능한 방법으로 번역 및 배포하여 각 부처가 최종 견해를 반영하여 국가 정책과 프로그램을 마련 하도록 독려해야 함

❖ 일반논평 의견 제시

- 독립모니터링체제는 위원회가 일반논평을 만들기 위해 협의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음. 또한 일반 논평이 채택되고 난 이후 정부의 관련 부처가 일반논평을 번역하고 배포할 것을 촉구할 수 있음

❖ 개인진정과 직권조사 절차에 참여

- 독립모니터링체제는 협약 선택의정서의 개인진정절차와 직권조사절차에도 참여함
- 개인진정절차와 관련하여, 개인진정을 접수하려는 장애인단체 혹은 개인에게 법적 조언 등의 지원을 제공하고, 개인진정절차에 따른 위원회 견해를 접근가능한 언어와 방식으로 번역 및 배포되도록 촉구, 정부의 견해 이행 여부 모니터링과 이에 대한 보고의 역할을 수행 할 수 있음
- 조사절차와 관련하여, 당사국의 협약 위반을 위원회에 알리고, 위원회가 조사 대상 국가를 방문해야 하는 경우 협조 요청, 조사 결과에 따른 위원회의 권고 이행 여부 정보 제시 등의 역할을 수행 할 수 있음

04

협약 모니터링 내 장애인단체 참여보장을 요구하는 다양한 목소리

▣ 협약 제33(3)조와 제4(3)조의 상호 연결성

- 독립모니터링체제는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를 통해 모든 분야에서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를 보장해야 함. 참여는 모든 모니터링 단계에서 의미 있고 실질적이어야 하며, 모든 장애인이 접근가능한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함. 장애의 다양성을 존중할 뿐 아니라 성별과 연령도 함께 고려되어야 함. 제33(3)조는 제4(3)조와 상호 연결되어 있으며, 이는 당사국이 여성장애인단체, 장애아동단체를 포함하여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가 모니터링 체제에 효과적이고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적절한 예산과 자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함²

▣ 분야별 전문성 갖춘 장애인단체 참여 필요

- 협약 제4조에서 이야기하는 장애인단체를 통한 장애인의 참여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중요한 검증 기준이 협약의 제33조 국내 이행과 모니터링에 장애인단체의 참여임. 장애인단체가 참여해야 하는 과정과 방법에는 다양한 선택지가 있지만, 장애인단체의 역할은 모니터링 작업에 없어서는 안 될 요소임. 특히 분야별로 전문성을 지닌 장애인단체의 역할은 매우 중요함. 장애인단체들은 이슈를 찾고 알리는데 기여하고 있음³

² OHCHR. (2016). Guidelines on independent monitoring frameworks and their participation in the work of the Committee.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³ Jan Peter Strömngren. (2009. 10. 26.). OHCHR Consultation on national frameworks for the implementation and monitoring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 ‘우리 없이 우리에게 대해 논하지 말라’ 협약의 모토

- 협약 본문과 위원회의 최종권해는 장애인단체의 완전한 참여가 당사국이 협약을 이행하는데 필수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음. 독립모니터링체제 내에 장애인의 참여를 보장하는 공식적인 시스템으로의 상설 기구가 반드시 필요함. 모니터링 기구는 반드시 정부 외부의 조직으로, 독립적인 기구이어야 함을 피력하면서, 동시에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해야 함. 장애인과 장애인을 대표하는 장애인단체가 모니터링 과정의 모든 부분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고 있음. 위원회는 많은 국가들에 ‘우리 없이 우리에게 대해 논하지 말라’는 협약의 모토와 제33조의 내용에 따라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⁴

■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장애인단체 참여한 독립 모니터링체제 호평

- 최종권해의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위원회는 많은 독립모니터링체제 중에서도 뉴질랜드나 스페인의 사례처럼 장애인단체를 통한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가 공식적인 체계로 보장되는 모니터링체제를 가장 인정하고 있었음. 장애인단체는 장애인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고유한 능력과 책임이 있기 때문임⁵

■ 위원회, 대한민국에 장애인단체 참여 보장 반복적 촉구

◆ 2014년 최종권해

본 위원회는 … 국가인권위원회가 본 협약의 이행 여부를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는데 필요한 인력 및 재원이 부족한데 대해 우려하고 있다. … 국가인권위원회가 본 협약의 이행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인적자원과 재원을 지원해 줄 것을 권고한다. 본 위원회는 더욱이 대한민국 정부가 장애인들과 그들을 대변하는 기관이 본 협약의 이행 여부를 감시하는데 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률 조항을 채택하도록 권고한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2014, para.61~62)

◆ 2018년 쟁점목록

34. 다음 각 호를 이행하기 위해 당사국이 취한 조치를 설명하십시오.

(a)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Policy Coordination Committe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가 장애인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개발하고 시행할 수 있게 한다.

(b)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을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자원을 충분히 제공한다.

(c) 장애인과 그 대표 기관이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감독 과정에 온전히, 그리고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한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2018, para.34)

⁴ NUI Galway. (2016.) *Establishing a Monitoring Framework in Ireland fo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Centre for Disability Law and Policy School of Law & Institute for Lifecourse and Society.

⁵ NUI Galway. (2016.) *Establishing a Monitoring Framework in Ireland fo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Centre for Disability Law and Policy School of Law & Institute for Lifecourse and Society.

◆ 2022년 최종견해

- 2022년 제2·3차 협약 이행에 대한 최종견해 역시 장애인단체의 참여에 대한 주문이 거의 모든 조항에서 이뤄짐. ‘장애인단체와의 긴밀한 협의’, ‘장애인단체의 참여 보장’ 등의 표현이 30회 이상 언급됨

- **오스트리아:** 장애인단체 대표, 인권분야 시민사회단체 대표, 개발협력 분야 시민사회 대표, 학계 한 명, 정부 부처 한 명으로 구성. 장애인단체의 참여는 아니지만 장애인단체 대표를 통해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는 형태
- **뉴질랜드:** 옴부즈만오피스,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단체연대체로 구성
- **스페인:** 장애인단체로 구성

05 해외 독립모니터링기구 구성 사례

■ 독립모니터링기구에 장애인단체 참여 확인된 사례 20개국 중 2개국⁶

- 살펴본 20개 국가 중 독립모니터링체제가 지정이 확인된 국가는 15개국. 캐나다, 그리스, 이탈리아, 슬로바키아, 스웨덴은 최종견해 문서를 통해 독립모니터링체제 지정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음
- 독립모니터링체제를 지정한 15개 국가 중 9개 국가가 위원회로부터 독립모니터링체제에 장애인단체 참여를 보장할 것을 권고받음. 오스트리아, 벨기에, 핀란드, 독일, 뉴질랜드, 스페인은 최종견해 문서에 장애인단체 참여에 대한 권고 내용이 없었음
- 장애인단체의 참여 보장을 권고받지 않은 6개 국가의 독립모니터링체제 구성 (구성 미확인 국가 제외)

표3 최종견해를 통해 본 국가별 독립모니터링체제 유무 및 구성

국가	독립모니터링체제 구성
1 호주	독립모니터링기구 있음 Australian Human Rights Commission (국가인권기구) 장애인단체 참여 보장을 위한 기구 마련 권고
2 오스트리아	독립모니터링기구 있음 Independent Monitoring Committee (장애인단체 대표, 인권 시민단체 대표, 정부부처 등으로 구성)
3 벨기에	독립모니터링기구 있음 Inter-federal Centre for Equal Opportunities (구성 확인 불가)
4 캐나다	독립모니터링기구 없음 장애인단체가 완전히 참여할 수 있는 독립모니터링기구 마련 권고
5 덴마크	독립모니터링기구 있음 Danish Institute for Human Rights (국가인권기구) 장애인단체 참여를 위한 조치 권고
6 에스토니아	독립모니터링기구 있음 Office of the Chancellor of Justice(법무부) 장애인단체 참여를 위한 조치 권고
7 핀란드 ⁷	독립모니터링체제 있음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 (국가인권기구)

⁶ 한국장애인개발원(2020)의 연구를 참고하여 2020년 당시 OECD 가입국과 협약 및 선택의정서 비준 국가 중 국가보고서 제출국 1차 기준, 국제연합개발계획(UNDP),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은행(World Bank)에 따른 선진국에 해당하는 국가를 2차 기준으로 확인, 모두에 해당되는 19개 국가에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총 20개 국가 선정
⁷ 핀란드는 2023년 기준 최종견해가 발표되지 않아 국가보고서를 토대로 내용을 파악함



8	프랑스	독립모니터링체제 있음 Defender of Rights, National Consultative Commission on Human Rights(국가인권기구) 장애인단체 참여를 위한 조치 권고
9	독일	독립모니터링체제 있음 추가 정보 파악 불가
10	그리스	독립모니터링체제 없음
11	이탈리아	독립모니터링체제 없음
12	라트비아	독립모니터링체제 있음 Office of Ombudsman 장애인단체 참여를 위한 조치 권고
13	리투아니아	독립모니터링체제 있음 Office of Equal Opportunities Ombudsperson, Council for Affairs of the Disabled 장애인단체 참여를 위한 조치 권고
14	룩셈부르크	독립모니터링체제 있음 장애인단체 참여를 위한 조치 권고
15	뉴질랜드	독립모니터링체제 있음 독립모니터링체제 장애인단체연대에 적절한 지원 권고
16	슬로바키아	정보 파악 불가 모니터링 과정에 장애인단체 참여 보장을 위한 권고
17	슬로베니아	독립모니터링체제 있음 Council of Slovenia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장애인단체 참여를 위한 조치 권고
18	스페인	독립모니터링체제 있음 Spanish Committee of Representative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19	스웨덴	독립모니터링체제 없음
20	대한민국	독립모니터링체제 있음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단체 참여를 위한 조치 권고

■ 해외 사례 관계자 인터뷰

- 장애인단체가 공식적인 독립모니터링체제에 포함된 뉴질랜드와 스페인의 사례를 자세히 확인하기 위해 뉴질랜드와 스페인의 독립모니터링체제에 참여하고 있는 장애인단체 관계자와 인터뷰를 진행함. 뉴질랜드 관계자는 온라인 대면 인터뷰, 스페인 관계자는 서면 인터뷰 실시함

뉴질랜드 인터뷰어	- 뉴질랜드 인터뷰 참여자 (A) - 시각장애가 있는 남성 - 뉴질랜드 시각장애인 시민단체 (Blind Citizens New Zealand)에서 활동 - 뉴질랜드 소재 대학교 교수 - 뉴질랜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독립모니터링체제의 전 의장
스페인 인터뷰어	- 스페인 인터뷰 참여자 (B) - 스페인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독립모니터링기구인 CERMI의 관계자 - 장애유무 확인되지 않음

뉴질랜드

Q1 뉴질랜드 독립모니터링체제를 소개해주세요.

▶ "뉴질랜드에서는 여섯 개의 장애인단체가 ‘장애인단체연대’라는 이름으로 함께 일하고 있어요. 법적인 기구는 아닙니다. 뉴질랜드 독립모니터링기구는 국가인권기구, **옴부즈만 오피스, 장애인단체연대 이렇게 세 개의 기구로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는 돌아가면서 의장의 역할을 맡습니다. 작년 상반기에는 저였고, 저는 올해 7월부터 다시 의장을 맡게 될거예요. ‘독립모니터링기구’는 **2010년 뉴질랜드 정부가 협약 제33조(국내 이행과 모니터링)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지정** 하였습니다."

Q2 장애인단체가 독립모니터링기구로 지정된 게 기가 궁금합니다.

▶ "2008년에 우익정부가 선출되었는데, 뉴질랜드가 협약을 비준한 직후예요. 우리가 9월에 협약을 비준했고, 새로운 정부는 11월에 출범했죠. 장애인들에게 지지받은 좌익정부에서 우익정부로 정권이 바뀐 것이예요. 우익정부의 대표가 장애인과 관련한 이슈를 다른 정당에서 다뤄달라고 요청했었어요. 국회의원이 4명 밖에 없는 작은 정당이었어요. 그런데 이 일을 맡은 여성분이

뉴질랜드 원주민 배경을 갖고 있는 거예요. 원주민에 대한 많은 배제와 차별을 경험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녀가 장애인은 아니었지만, 그녀는 장애가 무엇인지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없이 우리에게 대해 논하지 말라’라는 정신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녀가 해결책이 되었어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된 것이 운이 좋았죠.”

Q3 독립모니터링체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 “국가인권위원회는 3명의 스태프가 담당하고 있어요. 옴부즈만오피스는 2명의 스태프가 있을 거예요. 장애인단체 연대는 약간의 파트타임 형식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애인단체 연대의 사람들은 각자 본인의 본업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추가 시간에 독립모니터링기구의 일을 하는 거예요. 저도 대학교에서 일하죠. 단체에서 일하면서, 여유 시간을 내어 독립모니터링기구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옴부즈만오피스는 국회 산하 조직이에요. 국가인권위원회는 중앙정부의 예산을 받고요. 그 예산을 통해서 독립모니터링메커니즘이 운영되어요.”

Q4 각 기구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 “옴부즈만오피스는 조사권한이 있어요. 정부부처나 기구 등을 조사하기로 결정하면 조사하고 권고를 하죠. 독립모니터링체제와 관련해서는 옴부즈만오피스가 조사한 정보들을 활용하여 모니터링 업무에 적용하죠. 진정을 다루고, 이슈를 다루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옴부즈만오피스의 역할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 진정

을 받아요. 다양한 차별과 관련한 법률을 알고 있죠. 장애인단체는 생생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사회가 어떤지 너무 잘 알잖아요. 문제가 무엇인지 이야기하죠. 무엇이 바뀌어야하고, 무엇이 삶을 나아지게 할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독립모니터링체제와 관련해서는 조금 달라요. 그저 이야기만 할 수는 없고, 왜 이 이야기가 협약의 위반인지, 협약의 어떤 조항의 위반인지에 근거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 장애인들에게 생생한 이야기를 듣고, 협약의 무엇에 위배되는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Q5 장애인단체가 독립모니터링기구로 지정된 것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 “독립모니터링기구가 처음 수립되고,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을 때, 장애인단체연대체는 존재하지 않았었어요. 다른 장애인단체의 그룹이 있긴 했는데, 결국엔 흐지부지 되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장애인권리협약연대라는 이름으로 장애인단체가 모였는데, 오로지 협약을 모니터링하고 독립모니터링기구로 참여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다른 이유는 없었습니다. 뉴질랜드의 장애인단체는 협약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협업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독립모니터링체제에 참여한 장애인단체는 동등한 자격으로 테이블에 앉아요. 지난주에 정부와의 워크숍이 있었어요, 최종견해에 대한. 그 곳에 참여한 장애인단체 대표, 국가인권위원회, 옴부즈만오피스 스태프 모두 동등했죠. 특별 손님 같은 개념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스페인

Q1 독립모니터링체제란 무엇인가요?

> "독립모니터링기구는 협약의 제33조 2항에서 정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독립모니터링기구의 역할은 협약을 이행하는 당사국들의 이행을 촉진하고 보호하며 모니터링하는 것입니다. 또한 인권보호를 위한 국가기관의 법적 지위와 기능에 관한 모든 원칙을 고려하여 지정해야 합니다. 독립모니터링기구에 대해서 기능뿐 아니라 구성에 대해서도 꼭 이야기하고 싶어요. **협약의 제33조 3항을 시민사회(특히 장애인과 장애인단체)가 모니터링 단계에 참여해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애인단체가 참여하는 것은 선진적인 사례이거나 특별한 사례라고 볼 수 없어요. 협약을 최소한으로 이행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진정한 획기적인 발전은 (장애인단체의 참여 보장을 규정하고 있는) 협약이지요."

Q2 스페인의 독립모니터링기구를 소개해주세요.

> "2011년, 그러니까 협약이 발효되고 3년 후에, 스페인 정부는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을 모니터링하는 독립기구로 CERMI를 공식적으로 지정합니다. 이를 통해서 **CERMI는 협약과 관련해 유엔과 스페인 의회에 대해 강화된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이 **권한은 2011년 협약을 적용한 관련 법의 조항에 명시되어**있습니다."

Q3 장애인단체가 독립모니터링기구로 지정된 과정을 소개해주세요.

> "독립모니터링체제는 공식적인 절차나 비공식적인 절차, 모두를 통해 지정될 수 있어요. 조직이 **지정되거나 모니터링 체제를 설립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공식 요건은 없다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약과 독립모니터링체제가 다양한 법적 및 행정 체제에서 설립될 수 있도록 자체 관리 능력이 높은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간에, 장애인단체는 협약과 그 내용, 특히 제33조를 촉진하고 대표하며 장애인의 권리를 옹호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CERMI가 스페인 의회에 의해 2011년 법적으로 독립모니터링체제로 인정받았지만, 이미 2007년부터 이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 2007년부터 협약 모니터링에 관한 정기보고서를 발간하며 이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이미 **모니터링 역할을 열심히 하고 있었던 것도 독립모니터링기구로 지정된 이유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Q4 독립모니터링기구로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 "협약의 모니터링은 두 가지 수단이 있어요. 국내 수단과 국제 수단입니다. 국제적으로 협약은 선택의정서에 의해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개인진정, 직권조사, 심의를 진행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제33조의 이행과 병행하여 국내에서도 모니터링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상호 도움이 되는 상호작용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독립적인 모니터링 기구나 국가인권기구와의 상호작용과 관계 설정과 유지, 활성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고, 장애인단체도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와의 협력이 필

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측은 국내 및 국제 모니터링을 상호 보완적이고 상호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독립모니터링 체제로 지정 이후 변화	- 장애인단체의 공식적 파트너로서의 지위와 역할 보장 - 장애인단체 연대 및 협력 기회 마련	- 장애인단체의 유엔과 정부에 대한 공식적 파트너로서의 지위와 역할 보장 - CERMI의 대표성과 인지도 향상
---------------------	--	--

Q5 장애인단체가 독립모니터링기구로 지정된 것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 "우선 협약에 규정된 의무와 약속에 따라 독립 기구가 없다면 어떠한 이행도 불가능하다는 것이 중요한 지점입니다. 게다가 (장애인단체를 포함시키는 것은) 굿 거버넌스를 만들어나가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인권 및 장애인단체의 요구,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들어나가며 참여와 투명성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독립모니터링체제로서 우리가 누리는 주요 이점 중에 하나는 인지도입니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심의를 할 때 장애인단체의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국내에서도 8,000개 이상의 스페인 장애인단체를 대표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 CERMI가 드러나고 있어요."

표4 뉴질랜드, 스페인, 대한민국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독립모니터링체제 비교

질문	뉴질랜드	스페인
장애인단체 독립모니터링 기구 지정 시기	2010년 (협약 비준 2008년)	2011년 (협약 비준 2007년)
독립모니터링 체제 구성	국가인권위원회 옴부즈만오피스 장애인단체연대체	장애인단체 (CERMI)
정부 예산 지원 현황	국가인권위원회 (정부), 옴부즈만오피스 (국회 예산 지원)	정부 예산 지원
독립모니터링 체제에 장애인단체 참여 계기	소수자 배경을 가진 국회의원의 영향	- 장애인단체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활동 - 협약 이행 체제인 국가장애인위원회의 지정
법적 보장	법적 규정 없음	법적 규정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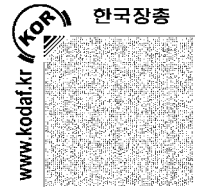
06 국내 장애인단체의 협약 모니터 전문성

2014년, 2022년 두 차례 심의 대응 경험

- 한국의 장애인단체는 2014년과 2022년 두 차례 심의에 대응하며 대규모 연대를 구성, 민간 보고서 작성, 사전 로비, 현지 로비, 장애인단체 최종견해 제안 등 절차에 따라 체계적인 대응 활동을 전개한 바 있음

13년 4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NGO보고서 연대' 출범
13년 5~8월	효과적 민간보고서 작성에 관한 집중 워크숍
13년 9~10월	타 국가 심의 참관
14년 3~5월	제1차 질의목록 채택 심의 참가
14년 8~9월	제1차 한국 심의 참가
14년 10~12월	최종견해 설명회

- 참가단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장애인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등 50개 단체	
18년	제2·3차 질의목록 채택 심의 참가
19년 5월	유엔장애인권리위원 초청 민간보고서 작성 워크숍
19년 10월	국가보고관 초청 심의 대응 워크숍
22년 3~7월	민간보고서 작성, 국가보고관 간담회
22년 8월	제2·3차 한국 심의 참가
22년 9월	제2·3차 최종견해 번역 및 배포



협약 및 최종견해 이행 지표 개발, 활용 방안 모색

- 장애인단체는 자발적으로 협약에 대한 이행 지표, 2022년 최종견해에 대한 이행 지표를 개발 하였음
- 특히 2022년 최종견해에 대한 지표 개발 이후 모니터링 연대를 구성하여 자체적인 모니터링을 해나갈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최종견해 이행지표개발연대

- 참가단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포럼(간사단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17개 단체

22년 12월	연대 발족
23년 1~4월	최종견해 이행지표 개발
23년 4월	최종견해 이행지표 개발 토론회 개최
23년 7월	보완 및 모니터링 계획 수립

아태지역 장애인단체 협약 심의 대응 촉진하는 국제협력사업 추진

- 장애인단체는 협약 심의 대응 노하우를 시민단체의 참여가 저조한 아시아태평양 국가에 알리고 그들의 참여를 지원하는 국제협력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심의 대응 및 모니터링에 대한 전문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음

한-몽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심의 대응 역량강화

- 주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후원: 한국장애인개발원

23년 3월	몽골 장애인단체 Equal Society MOU
23년 5~7월	몽골 민간보고서 작성 추진 및 검토
23년 6월	한국 심의 경험 공유 온라인 워크숍 몽골 국가보고관 초청 간담회
23년 7~8월	심의 사전 로비 및 현지 로비 계획 수립
23년 8월(예정)	제2·3차 몽골 심의 참가
23년 9월(예정)	제2·3차 최종견해 번역 및 배포
23년 10월(예정)	심의 성과 및 모니터링 계획 공유회

07 장애인단체 독립모니터링기구 지정을 위한 국내 과제는?⁸

협약 이행 중요성에 대한 전담부처와의 소통 강화, 인식 제고

- 협약을 이행하는 보건복지부의 전담 인력이 자주 바뀌고, 부처 내에 협약 자체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상황에서, 장애인단체가 모니터링 과정에 장애인단체 참여의 중요성과 특히 제33조에서 이야기하는 독립모니터링기구로 장애인단체를 지정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데 실패함
- 다음 심의까지 여러 선거와 다양한 장애인정책이 추진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해당 이슈를 놓치지 않고 추동하여 담당 이행 부처에서 중요성을 인지하고 정책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어떤 단체가 참여해야 하나, 장애인단체 대표성 합의

- 장애인단체가 지정될 경우, 단일 단체가 참여할 수도 있고, 단체의 연대체가 참여하게 될 수도 있음. 현실적으로 모든 장애인단체가 참여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임. 그러므로 여러 장애유형의 상황을 대표해 전할 수 있고, 국제협력 및 국내 장애인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지니며, 협약 이해도가 높은 단체를 선정하는 것이 필요함

⁸ 장애인단체 독립모니터링기구 지정을 위한 국내 과제를 파악하기 위해 C,D,E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전문가를 대상으로 인터뷰 실시하였으며, 인터뷰 결과를 정리한 내용임

■ 시민단체의 권한 어디까지인가, 권한 부여와 인정

- 정부의 이행을 감시하는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시정을 요구하는 일이 있을 것임. 독립모니터링기구로 지정된다면 이러한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도록 단체에 권한을 부여하고, 이를 인정해야함

■ 법적 근거를 통한 예산 마련

-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활동 지속을 위해 예산 마련이 필요함. 장애인단체들은 자발적으로 협약 모니터링 업무를 기획하고, 자체적으로 예산을 마련하고 있음. 현재 수행 중인 프로젝트들도 후원 기관의 선정 여부에 따라 당장 중단될 수 있는 상황임. 독립모니터링체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자원 지원이 필요함
- 위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독립모니터링기구로서의 장애인단체권한과 역할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수반되어야 함



월간 **한국장총** www.kodaf.kr

발행일 2023년 7월 31일 발행인 김영일 편집인 김동범 창간일 1999년 3월 29일

제 작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4층 T.02)783-0067 F.02)783-0069

※ 이 인쇄물의 오른쪽 윗부분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 바코드(보이스아이)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2023 SK텔레콤 장애청소년 코딩 챌린지 대회

10.19.(목)~10.20.(금), SK텔레콤 인재개발원



여행같은 추억, 올해도 함께하자!

! 대회안내 !

경진종목 | 영상제작, 알버트AI로봇 등을 활용한 코딩 경진 등

포상내역 | 대상 - 3개 부처 장관상 및 부상 시상

최우수상 - SK텔레콤 대표이사상 및 부상 시상 등

! 참가자 모집 안내 !

참가대상 | 특수학교(학급) 대상 만14세~24세 장애청소년

모집기간 | 2023.08.04.(금)~08.25.(금) 17:00

신청방법 | 홈페이지를 통한 참가신청 서류 제출

홈페이지 | skkodaf.kr ※세부내용 공지사항 참조

유선문의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02-783-0067